

고 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 - 77호

수송1-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85호(2010.12.30)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4호(2013.5.30)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종로구고시제2013-60호(2013.8.30)로 사업시행인가고시및 같은고시제2013-91호(2013.12.20), 같은고시제2014-53호(2014.6.20)로 사업시행변경인가(2차)고시된 수송1-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수송1-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 정비사업의 위치 : 종로구 수송동 51-8번지 일대
4. 사업시행면적 : 3,290.2㎡ (대지 : 2,890.2㎡, 정비기반시설 : 400.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 : (주)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용선
 - 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19층
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4. 8. 25.
7.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시설의 규모(공급계획) 등

토지이용현황(㎡)				건축시설의 총규모 및 이용현황				
계	건축시설	정비기반시설		건축규모 (연면적, ㎡)	공급계획(연면적, ㎡)			
		도로	공원	숙박, 업무, 판매시설	계	토지등 소유자	체비지 (일반분양)	보류시설
3,290.2	2,890.2	400.0	-	34,747.20	34,747.20	16,909.15	17,838.05	

※ 건축물 층수 및 높이 : 지상18층 지하5층, 높이 66.9m

나.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 없음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		소유자	공공시설 종류	무상귀속 관리청
			공부상	편 입			
1	수송동 51-8	대	2,978.6	75.7	(주)코람코자산신탁	도로	중로구청
2	수송동 51-9	대	327.2	324.3	(주)코람코자산신탁	도로	중로구청

8. 기타 관계도서 : 생략(중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2148-2674). 끝.

공 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4- 741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1. 개정이유**

현행 규칙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서식을 정비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역 구분 조항에 ‘명륜3가동’ 삭제 (안 제11조제1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정비·보완
(안 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종로구 자치행정과(담당:김정현)
- 연 락 처 : 전화 02-2148-1454, 팩스 02-2148-5814
- 전자우편 : kimjh3112@mail.jongno.go.kr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 (수송동 146-2)
-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현행 규칙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서식을 정비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역 구분 조항에 ‘명륜3가동’ 삭제 (안 제11조제1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정비·보완
(안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기간 : 2014. 8. 29. ~ 9. 18. (20일간)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 제 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혜화동, 명륜3가동” 을 “혜화동”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치회관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번호 :

* 필수항목으로 기재하여야만 시설 사용신청 접수가 가능함

신 청 인	* 성 명		단체명	
	* 연락처			
	주 소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사 용 목 적				
시설사용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 용 료	유 상	원	납부년월일	년 월 일
	감 면	(사유기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장 귀하

.....절 취 선.....

자치회관 시설 사용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성 명		사용시설 및 일시	
사용료 금액	원	납 부 일 자	
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장 (인)			

※ 유의사항 : 자치회관의 시설을 사용 신청함에 있어 시설 및 설비를 훼손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고 승인 받은 시설은 동장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서 약 서

○○동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하고,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장의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한다.
2. 자치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동장이 시설사용 결정을 임의취소 또는 변경 시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자치회관 시설 사용 신청의 접수 및 처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 (필수) 성명, 연락처 / (선택) 주소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3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 미 입력시는 시설사용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

* 필수항목으로 기재하여야만 수강 신청 접수가 가능함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프로그램명			수강기간	수강료
납부방법	신용카드 (), 타매너 (), 무통장입금 ()		감면여부	감면사유

위와 같이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접 수 자	(서명 또는 인)	접 수 일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 및 처리, 수강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3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 미 입력시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법정대리인 정보 】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작성

성명		연락처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주체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환 불 신 청 서

* 필수항목으로 기재하여야만 환불 신청 접수가 가능함

신청인	* 성 명		* 연락처	
	프로그램명		수강(사용)신청일	
환불내용	수강료() / 사용료()		환불사유	
납 부 액	원		환불신청액	원
입금계좌 (신청인명의)	*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위와 같은 사유로 수강료(사용료) 환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기한 : 5일 이내 계좌입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장(주민자치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자치회관 수강료(사용료) 환불 신청의 접수 및 처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 (필수)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3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 미 입력시는 환불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법정대리인 정보 】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작성

성명		연락처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주체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7호서식]

자 원 봉 사 신 청 서

등록번호 ○○동 - ()

* 필수항목으로 기재하여야만 자원봉사 신청 접수가 가능함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자격·면허	
직업	☐ 회사원 ☐ 주부 ☐ 학생 ☐ 생산직 ☐ 전문직 ☐ 자영업자 ☐ 주부 ☐ 기타			학력	☐ 중졸이하 ☐ 고졸 ☐ 대졸 ☐ 기타
봉사경력	봉사기관 / 단체	봉사기간	봉사내용		
희망분야	☐ 프로그램 강사 ☐ 집기정리, 청소 등 시설관리 ☐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 ☐ 공휴일, 새벽·야간 시설개방 ☐ 이용 및 시설 등 안내도우미 ☐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참여 ☐ 도서관리 및 대출 등 도우미 ☐ 재정봉사 (현금후원, 물품후원 등) ☐ 프로그램 편성, 수강생 및 ☐ 기타() 수강료 관리 등 업무보조				
희망시간	☐ 매월(주) 회 요일 : ~ : 까지 (시간) ☐ 언제든지				

본인은 종로구 ○○동 자치회관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자치회관 자원봉사 신청의 접수 및 자원봉사 활동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선택) 주소, 이메일, 직업, 학력, 봉사경력, 자격면허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3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 미 입력시는 자원봉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법정대리인 정보 】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작성

성명		연락처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주체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7호서식]

○○동 주민자치위원 신청(추천)서

* 필수항목으로 기재하여야만 자원봉사 신청 접수가 가능함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남, 여	*주소			
	*연락처			이메일		
추천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소속 (단체명)				*직위	
신청사유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주민자치위원 지원 및 추천 접수, 위원 선정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 지원자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주소, 연락처 / (선택) 이메일
 - 추천인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 (선택) 성별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3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 미 입력시는 주민자치위원 신청 및 추천이 불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추천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권역별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주민자치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프로그램 운영의 조정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해 구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권역별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권역별 운영) ①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권역(종로5·6가동, 이화동, <u>혜화동</u> , <u>명륜3가동</u>)	5. ----- <u>혜화동</u> ---

공 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14 - 742호****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시행하는 선진적인 청소환경이 생활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구 클린넷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가. 클린넷의 기능 및 추진하는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회원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효율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마.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 2014. 8. 29. ~ 2014. 9. 18.(21일간)**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9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종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우110-701)

(전화 02-2148-2377/FAX 02-2148-5922/E-mail soonja@mail.jongno.go.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되는 선진적인 청소환경이 생활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린넷(Clean Net)”이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활동을 하고,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마치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형태의 조직을 말한다.
2. “이엠(EM)”이란 ‘Effective Microorganism’의 약자로 ‘유용한 미생물’이란 뜻이며,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이하 “클린넷”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적인 생활 실천운동 및 주민 계도 활동
2.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
3. 골목길 청소,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활동 및 신고
4.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활동
5. 청소년, 어르신 등의 환경교육 및 환경교실 운영
6. 친환경 청소시스템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클린넷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4조(구성 및 운영) ①클린넷은 동클리넷을 총괄하며, 동클리넷은 행정동 단위로 1개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동클리넷은 회장, 부회장, 총무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클리넷의 회장, 부회장, 총무를 클린넷 구성원으로 한다.

③클린넷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재무국장 1명 및 각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④효율적인 클린넷 운영을 위하여 이엠(EM), 클린, 재활용 등 3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위촉) ①클린넷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 및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주소, 직장 또는 사업장이 종로구에 있는 사람
2. 청결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자연환경 보전의식이 투철한 사람
3. 구정에 관심이 많거나 청소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회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의 질병 및 회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임원 선출) ①회장, 부회장, 감사, 재무국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되, 재직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각 분과의 장은 분과별 회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장, 부회장과 겸임할 수 없다.

제8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클린넷을 대표하고 클린넷의 활동을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장은 소속 분과를 대표하고, 그 활동을 총괄한다.

제10조(회의) ①클린넷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전체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분과 회의는 각 분과별 매월 한 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활동지원) ①구청장은 클린넷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하여 회원증을 발급한다.

②구청장은 클린넷이 추진하는 활동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 구청장은 클린넷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워크숍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클린넷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모범구민 표창 규칙」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회원과 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공 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14 - 746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1.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허가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가스사업 등의 정의(제2조)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 및 판매사업 등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별표 1]

다. 고압가스 저장소 및 판매 허가요건의 세부사항[별표 2]

3. 입법예고기간 : 2014. 8. 29. ~ 2014. 9. 18.(20일간)**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9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종로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종로구청 환경과 (우110-701)

(전화 02-2148-2472/FAX 02-2148-5923/E-mail ecosola@mail.jongno.go.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6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요건)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 및 판매사업 등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공통사항)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철도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음·진동관리법」, 「도로교통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구 분	허가 요건의 세부사항
안전거리 확보	1.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1)다)의 기준에서 정한 거리의 2배 일 것 나. 사업소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와 반경 200m 이내에 주택 20호 또는 인구 60명 이상이 거주하거나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없을 것
재원 및 기술능력	1.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재원 1) 개인은 재산평가액이 1억원(법인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기술적 능력 1) 대표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출 것
시설기준	1.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사업소 부지 :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할 것 나. 저장시설 및 부대시설 : 저장탱크는 지하,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할 것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경우에는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사무실 면적은 18㎡ 이상이어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 할 것

[별표 2]

고압가스 저장소 및 판매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공통사항)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철도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음·진동관리법」, 「도로교통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구 분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안전거리 확보	1. 고압가스의 저장설비(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항가목1) 나)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화기용 용기 또는 소화기에 내장되는 용기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저장설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1) 나)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할 것 2. 저장시설 및 부대설비중 저장탱크는 지하,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할 것 3. 고압가스 판매의 경우에는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사무실 면적은 18㎡ 이상이어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 할 것

공 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4-747호****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1. 개정이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현행법률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계법령 명칭의 변경, 추가 및 삭제
- 나.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한 조정
- 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 라. 별지서식 신고 접수대장의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참조 : 환경과, 전화 : 2148-2455, FAX : 2148-5826, 담당 : 최민욱, E-mail : minuk3693@mail.jongn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9.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등 상위법의 개정 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현행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계법령 명칭의 변경, 추가 및 삭제
- 나.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한 조정
- 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 라. 별지서식의 신고 접수대장의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2014. 8. 29 ~ 2014. 9.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 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이용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구에” 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우리구에” 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종로구” 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로 “이를 적용한다.” 를 “적용한다.”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을 “사람(이하 “신고자 “라고 한다)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으로 한다.

제5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부분 중 “제3조에 의한” 을 “제3조에 따른” 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법령에 의하여” 를 “법령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인” 을 “2명” 으로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을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를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로 한다.

제8조 중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로 한다.

제9조부터 제10조를 제11조부터 제12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환경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청소업무 담당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공원녹지업무 담당과장, 하수업무 담당과장 등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및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과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위원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자,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관련기관에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의 “비고 :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태료 부과대상,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 및 행정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부과대상 및 행정처분 사항을 적용한다.”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금액 (지급일자)	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일자	조사결과	회신일자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모사전송,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제 차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자	
2. 회의장소	
3. 참 석 자	의 명
4. 회의안건	1. 2. 3.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210mm×297mm[일 반 용 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결정서

1.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포상금 심사내용

포상금 지급의뢰기관		지급의뢰서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신고요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3. 포상금 결정내용

포상금액	
결정사유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기환경보전법</u>, <u>수질환경보전법</u> 및 <u>소음·진동규제법</u>, <u>유해화학물질관리법</u>, <u>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u>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종로구 행정구역</u>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신고) ① (생략) 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u>신고자</u>”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FAX·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u>서울특별시종로구청</u>장(이하 “<u>구청장</u>”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u>별지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u>에 등재하고, <u>민원사무처리규정</u>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u> 제1조(목적) ---- 「<u>대기환경보전법</u>」,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u>」, 「<u>폐기물관리법</u>」, 「<u>유해화학물질 관리법</u>」, 「<u>토양환경보전법</u>」 등의 <u>환경법 위반행위</u>에 대하여 우리구에 ----- ----- -----. 제2조(적용범위) ----- <u>서울특별시 종로구</u> ----- -- <u>적용한다.</u> 제3조(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u>사람(이하 “<u>신고자</u>”라 한다)은</u> ----- ----- -----. ③ <u>제2항에 따른</u> ----- ----- -----.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u>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u>----- ----- ----- -----. 제5조(접수 및 처리) ----- - <u>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u> -----. 제6조(포상) ① ----- <u>제3조에 따른</u> ----- ----- ----- -----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현행	개정안
1. ~ 5. (생략)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 ③ (생략) ④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7조(처리결과와 통지) ① (생략) ②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품의 지급)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은 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1. ~ 5. (현행과 같음) 6. --- 법령에 따라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2명 ----- -----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 제7조(처리결과와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6호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 제8조(신고포상금품의 지급) ①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환경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청소업무 담당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공원녹지업무 담당과장, 하수업무 담당과장 등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 ② (생략) 제10조(예산의 확보) (생략) [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제6조제2항과 관련) 비고 :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태료 부과대상,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 및 행정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부과대상 및 행정처분 사항을 적용한다.	④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및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과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위원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자,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관련기관에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예산의 확보) (현행과 같음) [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제6조제2항과 관련) <u>〈삭제〉</u>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자료]

(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

(제6조제2항 관련)

1.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구	분	포 상 금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5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20만원

4.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포상금품 지급기준

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였으나,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전화카드·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품은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나. 환경보전 홍보차원에서 구청장이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모니터요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담회, 캠페인 참석자 등에게 5,000원 상당의 현금·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전화카드·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 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4 - 748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1. 폐지이유**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2007.9.27.)되면서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

3. 참고사항

이 규칙의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2014.9.19.(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참조 : 안전치수과장, 전화 02-2148-3234, 팩스 02-2148-5936, 담당 최인우 E-mail : inwo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우.110-7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 종로구 안전치수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8.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폐지이유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2007.9.27.)되면서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4. 8. 29. ~ 9. 19. (22일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4 - 749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1. 폐지이유**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2007.9.27.)되면서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이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2014.9.19.(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참조 : 안전치수과장, 전화 02-2148-3233, 팩스 02-2148-5936, 담당 최인우 E-mail : inwo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우.110-7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 종로구 안전치수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8.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폐지이유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2007.9.27.)되면서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4. 8. 29. ~ 9. 19. (22일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14-751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1. 개정이유**

「종로구 추모의 집」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구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비

나. 사용권자의 사용 범위 확대

다. 사용권자의 신청기간 삽입

라. 장사시설의 사용료 조정(별표 2)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용어의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참조 : 복지지원과 전화 : 2148-2541, FAX : 2148-5822, 담당 : 박명식, E-mail : myung2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8.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로구 추모의 집」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사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의 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비

나. 사용권자의 사용 범위 확대

다. 사용권자의 신청기간 삽입

라. 장사시설의 사용료 조정(별표 2)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용어의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4. 8. 29. ~ 9. 18.(20일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하며, “관리·운영에 관하여”를 “관리·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립봉안시설”을 “장사시설”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한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립봉안시설”을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립봉안시설”을 “장사시설”로 “제1호의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봉안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구립봉안시설 사용 허가증”을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립봉안시설”을 “장사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과 제2항 중 “구립봉안시설”을 “장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하는 때”를 “신청하는 경우”로 “3회에 한하여”를 “세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7조 각 호의 부분 중 “구립봉안시설”을 “장사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사망하여 화장 후 5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2. 구에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을 그 유족이 신청한 경우
3. 다른 지역에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장사시설에서 개장된 유골을 구에 주민등록을 둔 그 유골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4. 부부 중 한명의 유골이 이미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어 그 배우자가 같은 시설에 안치를 원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사용기간은 나중에 안치한 배우자의 안치 시점부터 계산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제8조제1항과 제2항 중 “구립봉안시설”을 “장사시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부분 중 “구립봉안시설”을 “장사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를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립봉안시설 사용자”를 “장사시설 사용자”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9조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 하는 때에는 당해” 를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외 부분 중 “서식에 의거” 를 “서식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립봉안 시설” 을 “장사시설” 로 한다.

제12조 중 “구립봉안시설” 을 “장사시설” 로 “기타” 를 “그 밖에” 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예외로 한다.” 로 한다.

제13조제1항과 제2항 중 “구립봉안시설” 을 “장사시설”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구립봉안시설” 을 “장사시설”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15조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예외로 한다”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구립봉안시설” 은 “장사시설”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립봉안시설” 을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각각 “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봉안시설” 은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그에 소요되는”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기존의 제1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7조에 따라” 로 한다.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호와 제20조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1조 중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 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중 “구립봉안시설” 을 각각 “장사시설” 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사시설 사용료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사용자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전의 사용자는 연장 사용부터 별표 2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징수기준

(제1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사용요금	비고
최 초 (15년)	일반주민	200,000	
	국가유공자	100,000	
	독립유공자	100,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0,000	
연 장 (5년)	일반주민	70,000	
	국가유공자	35,000	
	독립유공자	35,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5,000	

※ 관리비 : 장사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와 위탁협약 체결 시 결정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관리·운영에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구립봉안시설”이란 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구립봉안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2.	----- 장사시설----- ----- 사람 ----- -----.	
제4조(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장사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4조(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①	-----	-----
②	구립봉안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에 따라 -----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구립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봉안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립봉안시설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장사시설-----	-----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립봉안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	
제6조(사용기간 및 처리) ①	구립봉안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 장사시설-----	-----.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구	제6조(사용기간 및 처리) ① 장사시설-----	-----.	
		② -----	-----	

현행	개정안
립봉안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1회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유골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처리하되,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u>구립봉안시설</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배우자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3. 구에 설치되어 있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의 유족이 신청한 경우 4. 구립봉안시설을 기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권의 소멸 및 매매 등 금지) ① <u>구립봉안시설</u>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u>장사시설</u>----- ---- 신청하는 경우----- <u>세 차례만</u> -----. ③ ----- ----- ----- ----- <u>서울특별시 종로구</u> <u>(이하 “구” 라 한다)</u> ----- -----. 제7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u>장사시설</u>----- -----.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사망하여 화장 후 5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2. 구에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을 그 유족이 신청한 경우 3. 다른 지역에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장사시설에서 개장된 유골을 구에 주민등록을 둔 그 유골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4. 부부 중 한명의 유골이 이미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어 그 배우자가 같은 시설에 안치를 원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사용기간은 나중에 안치한 배우자의 안치 시점부터 계산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제8조(사용권의 소멸 및 매매 등 금지) ① <u>장사시설</u>----- -----.

현행	개정안
② 구립보안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립보안시설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당해 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거의무 및 매장) ① 구립보안시설 사용자는 제6조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되는 날까지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수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유골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사용자의 신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u>장사시설</u>----- ----- ----- -----. 제9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 ----- ----- ----- <u>장사시설</u> -----. 1. ~ 2. (현행과 같음) 3. <u>해당</u> ----- ----- 4. ----- <u>그 밖에</u> ----- ----- ② ----- <u>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u>----- -----. ----- ----- -----. 제10조(수거의무 및 매장) ① <u>장사시설 사용자</u>----- ----- <u>경우</u>----- -----. ② <u>제9조에 따라</u> ----- ----- -----. ③ ----- <u>않는 경우</u> <u>에는 해당</u> ----- -----. -----. 제11조(사용자의 신고) ----- ----- ----- <u>서식에 따라</u> ----- ----- -----.

현행	개정안
1. (생략) 2. 상속으로 인한 <u>구립봉안시설</u> 사용권의 승계 제1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u>구립봉안시설</u>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u>기타</u>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3조(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 ① <u>구립봉안시설</u>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는 구청장에게 납부하고, 관리비는 위탁자와 개별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u>구립봉안시설</u> 사용료는 장사시설의 조성 및 관리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구립봉안시설</u>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 3. (현행) 4. <u>기타</u> 구청장이 천재지변·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어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u>구립봉안시설</u>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1. (현행과 같음) 2. ----- <u>장사시설</u> ----- 제1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 ----- <u>장사시설</u>----- ----- -----. <u>그 밖에</u> ----- <u>예외로 한다</u>. 제13조(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 ① <u>장사시설</u>----- ----- -----. ② <u>장사시설</u>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 ----- <u>장사시설</u> ----- -----. 1. ~ 3. (현행) 4. <u>그 밖에</u> ----- ----- ② <u>제1항에 따라</u> ----- -----.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 ----- ----- ----- ----- <u>예외로 한다</u>. 제16조(위탁운영) ① ----- <u>장사시설</u>----- -----

현행	개정안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또는 당해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립봉안시설의 사용허가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및 처리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의 취소 등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의 수거 및 매장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신고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7. (생략)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 ③ ~ ④ (생략) 제17조(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봉안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자재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확산 등 장사문화개선을 위하여 조사·연구 또는 기타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나 개인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 의무) <신설> ① 수탁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 ----- ----- 해당 ----- -----. ② 제1항에 따라 ----- -----. 1.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 ----- --- 2. -----에 따른 ----- 3. -----에 따른 ----- 4. -----에 따른 ----- ----- 5. -----에 따른 ----- 6. -----에 따른 -----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운영지원 등) ① -----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 ----- ----- ----- -----. ② ----- ----- 그 밖의 ----- ----- 필요한 ----- -----. 제18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 제17조에 따라 -----

현행	개정안
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위탁의 취소) (생략) 1. ~ 2. (현행) 3. <u>기타</u>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각종 대장 및 서류와 <u>기타</u> 관련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위탁의 취소)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 제20조(지도·감독) ----- ----- ----- ----- ----- <u>그 밖에</u> ----- ----- -----. 제21조(시행규칙) ----- <u>시행에</u> ----- -----.